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23년 8월 29일

나. 회부일자 : 2022년 8월 30일

3. 제안이유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의 지정요건을 상위법령의 규정과 일치시키고 용어의 정의규정 등 일부 조문을 법제처 입안 기준 등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성격에 맞게 목적규정에서 불필요한 인용법령 삭제(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규정을 법제처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2조)

다.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요건 변경(안 제5조)

라. 전문교육기관의 명칭과 띄어쓰기 등을 올바르게 수정(안 제10조)

5. 검토의견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

가. 제출배경

-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의 지정요건이 상위법령에 위배 되는바 해당 사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고 용어의 정의규정 등 일부 조문을 법제처 입안기준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개정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

- 안 제1조는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점을 개선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규정을 법제처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입안기준에 따르면, 법령에 있는 용어정의를 가져와 동일하게 사용할 경우, 법령의 정의 조항을 인용하여 표현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바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됨
- 안 제5조는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에 대한 사항으로 기존 도내 출연·연구기관만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상위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정요건보다 범위를 한정하는 등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해당 조문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 안 제10조는 전문교육기관의 명칭을 올바르게 수정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문맥 등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 안 제11조는 시행규칙에 대한 조항으로 위임 규정이 별도로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바 실익이 없으므로 해당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됨

다.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의 지정에 대한 규정 중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개정함과 동시에, 법제처 입안기준에 따라 용어정의, 맞춤법, 문맥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함